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연번	구 분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1	박 석 의원안	박석 의원(찬성 21명)	2024년 8월 12일	2024년 8월 14일
2	이소라 의원안	이소라 의원 외 14명	2024년 8월 12일	2024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석 의원안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직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이 이월·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함(안 제18조).
- 나.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0조의4제2항 삭제).
- 다.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함(안 제24조제4항).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4.8.20. ~ 8.24.) 결과: 의견없음.

나) 이소라 의원안

- **제안이유**

- 지금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
-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해 제약이 따름.

- 이에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성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4항의 신설)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4. 8. 20. ~ 8. 24.) 결과: 의견없음.

3.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박석 의원안(의안번호 2022)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이월·저축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범위 확대 등 지방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이소라 의원안(의안번호 2035)은 임신검진휴가를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부여하기 위한 것임.

현 행	박석 의원 개정안	이소라 의원 개정안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u>일직·숙직·방호원</u>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신설></u>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u>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공무원</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u>	

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생략)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이월

· 저축한 연가 -----

-----.

-----.

[illegible]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준비, 학교 적응 등을

1. ~ 3.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할 수 있으며--

----- 사용할 수 있
다. -----
-----.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 사용할 수 있으며----

----- 사
용할 수 있다.

⑤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 12개월-----

③ (현행과 같음)

④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 ⑮ (현행 제4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
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⑦ 배우자가 유산하거
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
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
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
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
을 수 있다.

1.·2. (생략)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
치령」에 따른 출석수업

학습 지도-----
----- 사용할 -
--. 다만,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
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
학교 3학년일때부터 교
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

----- 사용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⑦ -----
----- 공무원은 ---

----- 사용할 수 있다.

⑧ -----

----- 사용할

1.·2. (현행과 같음)

⑨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 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 ⑬ (생략)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를」 -----

----- 사

용할 ---.

⑩ ~ ⑬ (현행과 같음)

⑭ -----

- 사용할 ----.

1. ~ 4. (현행과 같음)

⑮ -----

-----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

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

인인 자녀를 말한다)수

에 1을 더한 일수까지

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

-----.

다만, 장애인

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

무원의 경우에는 본문

①⑥ (생략) ①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식 요청 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 력지원한 공무원은 장 시간 투·개표사무 종 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 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 를 부여할 수 있다.	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 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①⑥ (현행과 같음) <삭제>
---	--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박석 의원안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정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특별휴가 현황 〉

휴가 종류		휴가 사유	휴가 일수
복 무 규 정 근 거	경 조 사 휴 가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경조사 및 대상에 따라 1~20일
	출 산 휴 가	임신, 조산 위험 또는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 전후 총 90일(<u>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u>)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 및 배우자	· 본인: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 배우자: 3일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경우	임신 기간 중 10일
	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	임신 기간중 日 2시간 이내
	육 아 시 간	5세(생후 72개월 미만)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日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이내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여성 최대 4일, 남성 1일
	여성보건휴가	생리 기간중 휴식을 부여	매월 1일 (무급)
	가족돌봄휴가	미성년 자녀 및 그 외 가족(성년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돌봄	10일 이내(미성년 자녀돌봄, 장애 자녀의 부모, 한부모공무원 2~3일 유급,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
조 례 근 거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u>대규모 재난</u> 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및 자원봉사를 하려는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 5일 이내 피해입은공무원 : 10일 이내
	심 리 안 정 휴 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동료와 직접 접촉한 사건·사고	사건·사고 발생후 1개월 이내 최대 4일(일 또는 시간단위 사용)
	교육지도시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日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이내
	수 업 휴 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중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 수업에 참석할 때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
	자녀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입영 당일 1일
	장기재직휴가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5~25일
	성과우수자휴가 (개인학습휴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0일 이내
		창의 아이디어 발굴 및 자기주도 학습기회 제공	2일 이내

나. 세부내용 검토

1)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신설(박석의원 안 제15조의2)

- 안 제15조의2는 기존 선거사무원에게 부여된 특별휴가 규정인 제24조 제17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 제4조의3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부여(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휴무)하기 위해 제15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임.
- 복무규정에 따라 휴무 대상 수행 업무를 구체화하고,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휴무를 더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등 휴무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박석 의원 안
<신설>	제15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u>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

제24조(특별휴가) 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 은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 를 부여할 수 있다.	<u>행한 공무원</u>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 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 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 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 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24조(특별휴가) <삭 제>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
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
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
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
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
을 더하여 부여한다.

2)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박석의원 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저연차 공무원(재직기간 1년이상~4년 미만)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연가 사용의 활성화는 연가를 갈 수 있는 업무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바,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박석 의원 안																														
제18조(연가일수) <u>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u>		제18조(연가일수) <u>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u>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11</td></tr><tr><td><u>1년 이상 2년 미만</u></td><td><u>12</u></td></tr><tr><td><u>2년 이상 3년 미만</u></td><td><u>14</u></td></tr><tr><td><u>3년 이상 4년 미만</u></td><td><u>15</u></td></tr><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td></tr><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td></tr><tr><td>6년 이상</td><td>21</td></tr></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u>1년 이상 2년 미만</u>	<u>12</u>	<u>2년 이상 3년 미만</u>	<u>14</u>	<u>3년 이상 4년 미만</u>	<u>15</u>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11</td></tr><tr><td><u>1년 이상 3년 미만</u></td><td><u>15</u></td></tr><tr><td><u>3년 이상 4년 미만</u></td><td><u>16</u></td></tr><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td></tr><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td></tr><tr><td>6년 이상</td><td>21</td></tr></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u>1년 이상 3년 미만</u>	<u>15</u>	<u>3년 이상 4년 미만</u>	<u>16</u>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u>1년 이상 2년 미만</u>	<u>12</u>																															
<u>2년 이상 3년 미만</u>	<u>14</u>																															
<u>3년 이상 4년 미만</u>	<u>15</u>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u>1년 이상 3년 미만</u>	<u>15</u>																															
<u>3년 이상 4년 미만</u>	<u>16</u>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생략)		~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이하 생략)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현황: 1,666명(15.9%) 〕

(단위: 명, %, '24.7.기준)

전 체(현원)	계 (A+B+C+D)	1년 미만 (A)	2년 미만 (B)	3년 미만 (C)	4년 미만 (D)
10,510	2,278	612	477	572	617

* 본청 및 사업소(시의회 제외)의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전체 기준(시선제, 한시 제외)

3)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박석의원 안 제20조의4)

- 안 제20조의4는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이월·저축한 연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박석 의원 안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생략)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삭제>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삭제>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삭제>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삭제>
5. (생략)	2. (현행 제5호와 같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10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사용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를 통해 연가 확대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최근 3년간(2022~2024.7.) 연가 저축 현황 〕

－ 각 연도 말에 내년으로 연가를 저축한 인원 및 일수

(단위 : 명, 시간)

연 도	현원(12.31기준)	저축 인원	저축 현황	소멸현황	비고
2022년	10,350	6,140	8,589일 3시간	해당 없음	
2023년	10,396	7,197	11,960일 7시간	해당 없음	
2024. 7월말	10,510	미도래	미도래	해당 없음	

※ 미포함 : 시립대 및 소방재난본부(복무시스템 분리)

※ 연가저축제는 2019.12.31.자 시행된 바, 소멸시효(10년) 미도래로 소멸된 저축연가 없음

4)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범위 확대 등 특별휴가 확대(박석의원 안 제24조)

- 안 제24조제4항, 제5항 및 제15항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범위를 확대(제4항)하고, 교육지도시간 사용 공무원 범위를 확대(제5항)하며, 가족돌봄휴가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단서를 신설(제15항)하려는 것임.

현 행	박석 의원 안
제24조(특별휴가)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 ----- 사용할 수 있으며----- ----- ----- 사용할 수 있다.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 12개월----- ----- 학습 지도----- ----- 사용할 ---.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⑮ ----- ----- ----- -----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u>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u>	----- <u>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u>----- ---. <u>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u>
--	--

-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범위 확대(5세 이하, 24개월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36개월) 및 가족돌봄휴가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4. (생략)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 다만, 교육지도시간 사용 공무원 범위 확대(6세이상 8세이하→9세이상 10세이하)는 상위 법령의 규정 외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것으로,
-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장안으로 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를 ‘6세이상 8세이하’로 확대 개정(2024.3.26.)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복무규정의 육아시간 사용범위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개정(2024.7.2.)됨에 따라, 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를 ‘9세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
- 교육지도시간 확대는 자녀교육 및 임신검진 관련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시민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대직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의 과중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연령별 자녀를 둔 공무원 현황]

(단위: 명, %, '24.7.기준)

구분	현원 계 (A)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B)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C)	9세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D)	소계(E)	비율(E/A)
계	10,510	888	713	593	1,845	17.55%

※ 현원 : 본청 및 사업소의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전체 기준(시선제, 한시 제외)

※ (B+C+D)의 합과 소계(E) 차이 :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B,C,D에 중복 계산하고 소계에서는 1명으로 계산함

- 행정국은 적극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교육지도시간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원안은 10세 또는 4학년까지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행정국 수정의견 〉			
현	행	박석 의원 개정안	수정의견
제24조(특별휴가)		제24조(특별휴가)	제24조(특별휴가)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 ----- 12개월----- ----- 학 습 지도----- ----- 사용할 ---.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⑤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 ----- 12개월----- ----- 학 습 지도----- ----- 사용할 ---.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5) 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이소라의원 안 제24조제4항 신설)

- 이소라 의원안 제24조제4항은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제4항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이소라 의원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

④ ~ ⑰ (생략)	<u>가를 사용할 수 있다.</u> ⑤ ~ ⑱ (현행 제4항부터 제17항 까지와 같음)
------------	--

-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은 상위 법령의 규정 외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특별휴가 신설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광역시·도 중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동 휴가(10일)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7.) 임신검진휴가 사용 현황]

(단위 : 명,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7월말	비고
휴가자	127	149	120	
휴가건 수	653	780	554	

※ 미포함 : 시립대 및 소방재난본부(복무시스템 분리)

- 행정국은 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대상자 판단을 위한 필요서류, 세부 사용 기준 등)을 내부방침 등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행정국 수정의견 〉			
현행	이소라 의원 개정안	수정의견	
제24조(특별휴가) <u><신설></u>	제24조(특별휴가) <u>④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u>	제24조(특별휴가) <u>④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6) 경조사 휴가 신설(박석의원 안 별표3)

- 안 [별표 3]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3일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가족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박석의원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u>	<u>1</u>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u>3</u>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u>	<u>1</u>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7) 자구표현 정비(안 제7조, 제24조)

- 안 제7조 및 제24조는 조례의 표현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7조 : “일직·숙직·방호원” →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공무원”

※ 안 제24조 : “공무원이” → “공무원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있다”

“받을 수 있으며” → “사용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다” →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주어야 한다” →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신청하면” → “공무원은”

“받을” → “사용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을” → “사용할”

- 조례의 문구·표현 등을 정비하여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용어정비는 조례나 규칙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8) 부 칙(박석의원 안 부칙)

- 박석 의원안 ‘부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의 적용례와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나, 육아시간 사용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있으나 교육 지도시간에 대한 적용례가 없는 바,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부 칙 (박석 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별표 5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8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대부분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 다만,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닌,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 및 조례의 적기 제·개정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복무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인사권은 시장의 전속적인 권한인바, 의원발의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